2006. 6. 19(월) 10:00



제 12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 2차 본 회 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년 6월 12일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6년 6월 1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6월 16일(예산결산특위 제 2차 회의)

마. 의안번호 : 「2005 세입·세출결산 승인안(2006 ~ 26호),

2005 예비비 지출 승인안(2006 ~ 27호)」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항에 의거「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7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이월액)
합	계	315,607,972 (301,483,396)	315,358,581 (301,272,365)	, ,	, ,
일 반	회 계	279,561,454	279,365,540	202,835,659	76,529,881
특 별	회계	36,046,518 (21,921,942)	35,993,041 (21,906,825)	17,427,637 (10,203,333)	

※()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 제외분임.

- O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 수납액은 315,358,581천원이며

- 지출액은 220,263,296천원으로
- 차인잔액(이월액)은 95,095,285천원임.

O 다음연도 이월액(잉여금)중에는

- 명 시 이 월 : 157건 34,227,738천원

- 사 고 이 월 : 93건 17,840,768천원

- 계속비 이월 : 7건 21,102,652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 : 705,556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21,218,571천원임.

2) 세입결산

(단위: 천원)

회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오납반환액	미수납액
합	계	301,483,396	306,353,964	301,272,365	118,123	5,081,599
일반회	계	279,561,454	282,750,807	279,365,540	117,832	3,385,267
특별회	계	21,921,942	23,603,157	21,906,825	291	1,696,332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제외.

- 2005년도 총수납액은 301,272,365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
 306,353,964천원 대비 98.3%이며, 미수납액은 5,081,599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7%임.
- 2005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279,365,540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82,750,807천원대비 98.8%이며 미수납액은 3,385,267천원으로 1.2%임.
- 2005년도 특별회계 수납액은 21,906,82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3,603,157천원 대비 92.8%이며 미수납액은 1,696,332천원으로 7.2%임.

3) 세출결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합 계	213,255,737	301,483,395	213,038,992	67,350,266	21,094,137
일반회계	201,115,045	279,561,453	202,835,659	62,914,097	13,811,697
특별회계	12,140,692	21,921,942	10,203,333	4,436,169	7,282,440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제외.

- 2005년도 총지출액은 213,038,992천원으로 예산현액 301,483,395천원의 70.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350,26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2.3%이며, 불용액 21,094,137천원은 예산현액의 7.0%임.
- 2005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202,835,659천원으로 예산현액 279,561,453천원 대비 72.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2,914,09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2.5%이며, 불용액은 13,811,69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4.9%임.
- 2005년도 특별회계 지출액은 10,203,333천원으로서 예산현액 21,921,942천원의 46.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436,16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0.2%이며, 불용액 7,282,440천원은 예산현액의 33.2%임.

4) 계속비 결산

(단위: 천원)

재 원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합 계	16,911,394	15,888,636	32,800,030	13,415,966	19,379,651	4,413
국고 보조	복합문화단지 조성	1,000,000	250,000	1,250,000	2,387	1,247,613	
국·도비 보조	거창도서관 건립	2,800,000	2,282,714	5,082,714	3,920,128	1,162,586	
국고 보조	거창 스포츠파크	4,550,000	4,831,947	9,381,947	3,636,856	5,740,678	4,413
국고 보조	소각장 시설 설치사업		630,000	630,000		630,000	
국·도비 보조	노인여성장애인 삶의쉼터 조성사업	4,861,394	2,011,957	6,873,351	1,626,070	5,247,281	
도비 보조	읍민생활공원	2,000,000	3,916,390	5,916,390	2,904,822	3,011,568	
국고 보조	거창읍 청사신축	1,700,000	1,965,628	3,665,628	1,325,703	2,339,925	

5) 예비비 결산

O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444,873천원으로서 수해복구사업(20건)외

2개사업에 1,904,09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442,612천원을 지출하고, 1,461,11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7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사업별 내역

(단위: 천원)

(단취 •						
구 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 출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2 건	1,904,097	1,903,725	442,612	1,461,113	372
재난관리	8.2-8.3수해응급복구 장비,자재대	72,431	72,059	72,059		372
사회보장	이재민 구호	12	12	12		
관광진흥관리	구연교 수해복구사업	6,650	6,650	6,650		
체육청소년	갈계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	4,627	4,627	4,627		
산림보호	사유림 복구사업	31,014	31,014	1,441	29,573	
산림관리	사유림 복구사업	112,655	112,655	4,288	108,367	
산림관리	사유림 복구 (자치단체간 부담금)	46,716	46,716	46,716		
건설행정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624,376	624,376	78,992	545,384	
농업기반조성	수리시설 복구사업	153,890	153,890	53,463	100,427	
농업기반조성	수리시설 농경지 복구사업	16,017	16,017	1,419	14,598	
도로관리	농어촌도로 복구사업	28,205	28,205		28,205	
복구지원	지방2급소하천 복구사업	423,848	423,848	12,091	411,757	
복구지원	소하천 복구사업	227,089	227,089	16,474	210,615	
건축행정	수해피해주택 복구비	570	570		570	
농업소득관리	농작물 복구	2,198	2,198	2,198		
축수산관리	가축입식비 지원	82	82	82		
시설관리	거창사건 추모공원 복구사업	11,617	11,617		11,617	
서무관리	국민건강보험 부족분	140,000	140,000	140,000		
상공관리	가조공설시장 누수피해 보상금	2,100	2,100	2,100		

6) 기금결산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잔액	당해년도	당해년도말잔액	
종 류 별	신선도를 산액	수 납 액	지 출 액	경애선도달산액
합 계	2,307,254	683,804	350,101	2,640,957
거창 아림예술제 기금	310,004	71,460	11,464	370,000
거창군체육회진흥기금	23,337	3,475		26,812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291,041	71,971	19,700	343,312
거창군 노인복지 기금	795,892	132,355	100,272	827,975
거창군 여성발전 기금	265,882	131,709		397,591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	583,394	251,208	195,185	639,417
거창군 식품진흥 기금	37,704	21,626	23,480	35,850

7) 채권액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발 생 액	당 해 년 도 소 멸 액	당해년도말 잔 액
	합 계	2,234,758	1,002,373	1,320,639	1,916,492
Õ	일 반 회 계	215,151	20,000	18,907	216,244
	소 계	2,019,607	982,373	1,301,732	1,700,248
특	주 택 사 업	156,765	56,516	107,069	106,212
별회	농업발전기금	70,375			70,375
계	저소득주민	111,524	210,787	77,003	245,308
	농 공 단 지	1,680,943	715,070	1,117,659	1,278,353

8) 채무액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발 생 액	당 해 년 도 소 멸 액	당해년도말 잔 액
	합 계	15,823,186	741,000	1,081,519	15,482,667
Õ	빌 반 회 계	10,252,801	500,000	31,601	10,721,200
	소 계	5,570,385	241,000	1,049,918	4,761,467
특	공 기 업		241,000		241,000
별 회	상 수 도	3,818,800		211,100	3,607,700
계	주택사업	151,585		38,818	112,767
	농공단지조성	1,600,000		800,000	800,000

O 당해연도 말 현재액 15,482,667천원을 상환재원별로 분류하면, 지방비 부담은 10,500,000천원이며, 실수요자 부담이 4,982,667천원임.

9) 보조금 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반 납 액)
ŏ	나 계	108,641,277	108,383,922	77,751,296	29,927,070	705,556
ģ	밀반회계	98,469,051	98,464,639	71,661,418	26,097,665	705,556
E	소 계	10,172,226	9,919,283	6,089,878	3,829,405	
특 별	상수도	3,068,912	3,068,912	1,164,471	1,904,441	
회 계	의료보호	103,731	103,731	103,731		
	수질개선	6,999,583	6,746,640	4,821,676	1,924,964	

3. 2005 결산검사 결과

가. 총 평

⇒ 2005년도 세입·세출 최종 재정규모는

○ 세 입 : 315,358,581천원 ○ 세 출 : 220,263,296천원

○ 이월액(잔액): 95,095,285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34,227,738천원, 사고이월 17,840,768천원, 계속비이월 21,102,65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705,55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218,571천원임.

- 2005년도 결산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지방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일부 항목에서 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예산 현액의 30.1%인 95,095,285천원이 이월되어 21,673,51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잠재력배양,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조성, 정상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운영, 국가의 정책기본방향과 효율적인 연계로 지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세입면에서 보면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92,815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5.3%이며,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등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조정 등 세입확보노력 강화, 지역부존자원 개발과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지역세입기반 확충, 민간위탁 등의 실현으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요망됨.
- 세출면에서는 지방재정법규, 각종조례 및 규칙에 의거 배정하고 집행하였고, 각 항목에서 1,401,988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어느 정도 예산집행의 행정효과를 거두었으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소모성경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됨.
- O 부문별로 보면

- 각종 사업면에서는 당초 계획한 사업들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일부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계절차를 검토하여집행하고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추진시 집단 민원이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 및 지방재정운영공개를 실시하는 등 사전 협의하여시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공통경비가 각 사업간에 균형을 유지토록 배분하여야할 것임.
- O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7종으로, 운용실적이 저조하며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여유자금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에 정기예금, CD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O 채권액인 융자사업은 융자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군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장기 연체채권회수에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회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조사업은 산업진흥이나 특정사업장려, 행정목적 수행 등 공익적 지출로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나, 특정분야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은 특혜시비와 형평성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요구되며,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정 기준없이 Pool 예산과 실·과 예산에서 중복 지원되고 있어, 적절한 지침 마련 등 대책이 요구되며, 일부 단체는 사업운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행정지도가 요구됨.

나. 미흡한 사항

- O 저출산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로 농업경쟁력 약화와 고령 화로 인한 농업인 복지사업분야 취약 등 인구증가대책 추진이 미흡함.
- O 가조온천 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 미흡.
- O 지방재정확충 추진사항 등이 미흡하며,
- 집행부에서 당초 추진한 집행예산에 대하여, 의회 의원들이 해당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부서별로 내실있는 자체평가를 선행하여 결산검사 승인안 제출시, 관련자료 제출 미흡.

4. 질의 및 답변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6. 5. 22~ 6. 10(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법,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한 조기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과 체납일소를 위한 홍보와 이에 대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그리고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및 명시이월비가 과다 발생 되어, 예산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할 것과, 사업의 조기추진 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ㆍ집행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과,
 - 특히 보건소의 보건사업운영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출예산 과목을 특정과목에 일괄계상 편성 후에 예산 전용하는 사례는 크게 잘못 되었으므로, 향후 예산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일부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별 필요성과 단체들의 형평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되도록 하고 집행후 사업성과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평가 등으로, 향후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 O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 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